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3기
후보생 모집·선발 요강

2026.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국방부

목 차

I. 제도 개요	1
II. 후보생 모집 및 선발	3
1. 모집인원	
2. 지원자격	
3. 선발 방법	
4. 접수 방법	
5. 모집·선발 일정(안)	
III.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6
1. 1단계 전형 제출서류	
2. 2단계 전형 제출서류	
IV. 기타 안내사항	7
1. 최종 합격자 후보생 등록	
2. 모집설명회 개최	
3. 문의처	

[별첨 #1]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의 권리 및 의무

[별첨 #2]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I. 제도 개요

□ 개요

-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의 우수 사이버보안 인재들이 군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민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역 장교 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정보보호특성화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후보생을 선발하여 일반전공 외 사이버전문교육, 안보학 교육 등 실시 예정
 -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사이버작전 관련 부대에서 3년간 의무 복무
 - 전역 후 취·창업 연계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지속 활용·관리



□ 교육 및 지원

○ 후보생 필수교육(p.3 참고)

- ① 일반전공 : 대학별 졸업 이수 요건 및 정보보호특성화 트랙 이수
- ② 사이버전문교육 : 대학별 지정된 사이버작전 관련 지정 전공과목
 - 총 21학점 이상 이수
- ③ 안보학 : 대학별 수강 가능한 안보학* 관련 과목
 - 총 6학점 이상 이수

* 무기체계론, 국가안보론, 북한학, 전쟁사, 리더십 등

○ 후보생 교육 지원

- ① 연구비 지원 : 전문역량개발비 지원(학기당 250만원, 총 4학기)
- ② KISA 교육 제공 : 화이트햇스쿨 기본교육(온라인) 수강 지원 등

③ 후보생 관리 : 국방부 주도 후보생 면담, 군 실무자 멘토링 활동 지원 등
□ 임관 및 복무

○ 대학 졸업(2월) 후 양성교육 및 임관(6월) 추진

- 육군학생군사학교 '전문사관 과정' 입교 및 양성교육 이수(4~5월, 7주)

○ 임관 후 직무 보수교육을 거쳐 사이버작전 부대 배치(7월 말) 및 3년간 의무복무

○ 임관 2년 차부터 장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선발에 지원 가능

- (장기복무) 의무복무 기간 이상 계속 복무하는 제도

※ 복무 기간 : 장기복무 선발 시 의무복무 10년, 계급정년까지 복무 가능

- (복무연장) 의무복무 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추가 복무하는 제도

※ 복무 기간 : 1~4년 연장 가능

○ 전역 후 취업 정보보호 전문기업 채용 가점 부여 등 우대사항 제공

- KISA-정보보호 전문기업 16개사 협약 체결(2025. 9. 4.기준)

※ 해당 우대사항 및 협약사는 KISA 관련 사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일정(예정)

○ 제3기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학사 운영 : 2027. 1. ~ 2029. 2.

○ 제3기 사이버전문사관 양성교육 : 2029. 4. ~ 2029. 5.

○ 제3기 사이버전문사관 임관

: 2029. 6. 1.

Ⅱ. 후보생 모집 및 선발

□ 모집인원

○ 총 10명(성별 제한 없음)

- 육군 3명, 해군 3명, 공군 3명, 해병대 1명

※ 지원서 제출 시 희망 복무 군(1~3지망)을 함께 제출(최종선발 시 희망순위 고려)

□ 지원자격

○ 아래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후보생 필수 교육 이수 후 `29년 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

※ 최종 선발 후 정보보호특성화 트랙 이수 필수

② 임관일(2029. 6. 1.)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자

- 2001. 6. 2. ~ 2009. 6. 1. 출생자

-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가능 연령 연장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지원 가능 연령	2001. 6. 1. 까지	2000. 6. 1. 까지	1999. 6. 1. 까지

※ 군필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원 연령 연장

□ 선발 방법

○ 총 3단계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 선정

- (1단계) 서류 전형 → (2단계) 면접 전형 → (3단계) 종합 평가

구분	주관	심사 내용
1단계	서류전형위원회	자기소개서, 관련 실적, 대학성적
2단계	면접전형위원회	인성·신체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면접평가
3단계	최종선발위원회	종합평가

○ (1단계) 지원 서류의 **종합성적을 바탕으로 고득점순 선발**(총 100점 만점)

- 자기소개서(24점) : 서류전형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 부여
- 관련 실적(6점) : 사이버보안 관련 분야 대내·외 활동 및 실적

항목	내용
논문지	· [2점] 국내·외 논문지 (SCI(E)인 경우 +2점) · [1점] 국내 학술지
대회 수상	· [3점] 국제 해킹대회 및 장관급 이상 수상 · [1점] 기타 부처·공공기관 주관 대회 수상
자격증	· [3점] CISA, CCNP, CISSP · [2점] CCNA, CCIE · [1점] 네트워크관리사1·2급, 리눅스마스터1·2급

- 대학성적(70점) : 성적표상 백분율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부여

○ (2단계) **인성·신체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면접평가** 실시

①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MMPI-Ⅱ) 개별 실시

※ 인성검사 링크 및 인증코드는 1단계 합격자 대상 안내

② 신체검사 : 국군병원을 단체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합·불합 판정

※ 채혈, 엑스레이 촬영, 구강, 키, 몸무게 등 기본 검사 진행

③ 체력검정 : 국민체력 100(nfa.kspo.or.kr)을 통해 개별 센터 예약 및 실시

- 건강체력 항목 4종목(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으로 체력검정 실시 후, ‘인증서’ 및 ‘항목별 평가결과지’ 이메일 제출

※ 4개 종목 모두 4등급 시 불합격 처리

※ 인증서 및 평가결과지 유효기간은 2단계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26.11.13.) 6개월 이내

④ 신원조회 : 국방부

⑤ 면접평가 : 인성 및 태도, 학업수행능력, 군 장교로서의 품성 등 평가

○ (3단계) 1, 2단계 전형 결과 기반 **최종 합격자 선정**

□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내 이메일(rocs@kisa.or.kr)을 통한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 `26. 9. 1.(화) ~ `26. 9. 29.(화)

□ 모집·선발 일정(안)

구분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6. 8. 25.(화)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1단계 전형	지원서 접수	'26. 9. 1.(화) ~ 9. 29.(화)	· 이메일 접수
	합격자 발표	'26. 10. 7.(수)	· 개별 안내(SMS, 이메일)
2단계 전형	인성검사	'26. 10. 8.(목) ~ 11. 13.(금)	· 온라인 검사 안내 (SMS, 이메일)
	신원조회	'26. 10. 19.(월)~10. 30.(금)	· 국방부
	신체검사	'26. 11. 6.(금)	· 국군병원 단체 방문
	체력검정	~'26. 11. 13.(금)	· 국민체력 100 지정 센터 (※매월 16일 또는 1일 오후 1시에 개별 예약 후 측정, 기한 내 제출)
	면접평가	'26. 11. 20.(금)	· 개별 안내 (SMS, 이메일)
최종 합격자 발표		'26. 12. 4.(금)	· 개별 안내 (SMS, 이메일)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 예정(SMS, 이메일)

Ⅲ.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1단계 전형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기한
공통 필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스캔본 별도 제출) - 대학 성적증명서(백분율 점수 필수 표기) -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휴학증명서)	이메일	~9. 29.(화)
해당자만	- 사이버보안/국방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 병적증명서(남학생 필수) - 군 복무 간 '징계내역' 반드시 포함		

○ 모든 지원서 및 서류는 이메일(rocs@kisa.or.kr)을 통해 제출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한글(.hwp) 및 PDF(.pdf) 파일로 제출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본 별도 제출
- 대학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백분율 점수를 포함해야 함
- 모든 자료 발급일은 공고일(‘26. 8. 25.) 이후이어야 함

○ 공고사항 미숙지, 기재사항 오류, 제출서류의 착오·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2단계 전형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기한
공통 필수	- 국민체력 100 인증서(총2부) - 인증서 혹은 참가증 1부, 항목별 평가결과지 1부	이메일	~11. 13.(금)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방부(신원조회), 국군수도병원(신체검사)의 시스템 사전 등록을 위함		~10. 14.(수)

○ 2단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2단계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지원자는 2단계 전형 포기자로 간주하여 1단계 합격을 일괄 취소함

IV. 기타 안내사항

□ 최종 합격자 후보생 등록

- 최종 합격자는 기한 내에 후보생 등록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후보생 등록 동의서 및 등록 기간은 개별 통보
- 후보생 등록 기간 중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를 합격자로 선정

□ 모집설명회 개최

- (모집설명회) 2학기 개강 후(`26. 9. 1. ~ `26. 9. 11.) 개최 예정
 - KISA 누리집, 학과 게시판 등을 통해 추후 세부 일정 안내
- 설명회 개요
 -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소개
 - 제3기 사이버전문사관 모집·선발 관련 설명
 - 질의응답 및 기타 문의사항 답변 등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정예보안리더양성팀 사이버전문사관 담당
 - (이메일) rocs@kisa.or.kr, (전화번호) 061-820-3553, 02-405-6513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의 권리 및 의무】

□ 휴학

-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거나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개인사정 등 최대 1년 휴학 인정
- 휴학 기간 중 전문역량개발비 지급이 유보되며, 후보생 임관 유예

□ 타 전공으로 변경 불가

- 후보생은 반드시 정보보호특성화 트랙의 학부 재적생이어야 함
- 단, 해당 전공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복수전공 등은 허용

□ 자격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 장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처분이 발생한 사람 [별첨2]
4. 소속대학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5. 소속대학에서 자퇴한 사람
6. 소속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
7.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소정의 시기에 임관이 불가능한 사람
8. 후보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보생 자격 포기를 희망하는 사람
9. 후보생 신분을 획득한 이후, 현역병 입영 등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
10. 후보생 기간 동안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11. 기타 후보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 임관 포기 및 자격 취소 시, 기수혜 전문역량개발비 전액 반환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 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